

의안번호	제3095호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 해양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고성군수
제출연월일	2026. 4. 24.

고성군 해양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095호
----------	--------

제출연월일: 2026. 4. 24.

제 출 자: 고성군수

1. 개정이유

고성군 해양관광시설의 방문객 유입 근거 마련 및 이용료 산정 기준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 이용료 감면확대를 통해 시설 운영의 내실화와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여 고성군 해양관광시설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각종 홍보 행사 및 시책 사업 근거 마련(안 제4조)

나. 시설 활성화 등을 이용료 감면 근거 신설 및 감면의 대상·기준·절차에 관한 시행규칙 위임 근거 신설(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다. 해양관광시설 이용료 등 조정 및 지역 주민 이용증대를 위한 이용료 감면 확대(안 별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관광진흥법」 제48조

2)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2조,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3)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조~제3조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 시설의 이용제한 기준 및 감면 대상 규정 신설

[복지지원과-12621(2026. 3. 19.)호]

라. 기 타

1)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6-598호

가) 예고기간: 2026. 3. 12.~2026. 4. 1.(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해양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해양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활성화 및 원활한 관리·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군수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책 및 홍보 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거나, 시상금, 기념품,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 “(이용료 감면)”을 “(이용료의 감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이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② 군수는 시설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이벤트 개최, 연계상품 운영, 계절적·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 감면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폭언·폭행·성적 언동·성추행·성폭력·불법촬영 등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사업추진) 군수는 해양관광 시설의 <u>원활한 관리 및 운영</u>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1. ~ 5. (생략)</p> <p><u><신설></u></p>	<p>제4조(사업추진) ① ----- --- <u>활성화 및 원활한 관리·운영</u>----- -----.</p> <p>1. ~ 5. (현행과 같음)</p> <p>② <u>군수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책 및 홍보 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거나, 시상금, 기념품,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u></p>
<p>제7조(이용료 감면) ① <u>해양관광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단체 및 기관은 별표 4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u></p> <p><u><신설></u></p> <p><u><신설></u></p>	<p>제7조(이용료의 감면 등) ① <u>이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4와 같다.</u></p> <p>② <u>군수는 시설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이벤트 개최, 연계 상품 운영, 계절적·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u></p> <p>③ <u>제2항에 따른 이용료 감면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u></p>
<p>제8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p>	<p>제8조(이용제한) -----</p>

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관광시설의 입장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2. (생략)

<신설>

3. (생략)

-----.

1.·2. (현행과 같음)

3. 폭언·폭행·성적 언동, 성추행·

성폭력, 불법촬영 등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

우

4. (현행 제3호와 같음)

■ 고성군 해양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1] <현행>

해양관광시설 명칭 및 위치 (제3조 관련)

시설명	위 치	비고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고성군 하일면 송천리 108번지 일원	
와도 야영장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 1572, 1582번지 일원	*방문자센터 포함
소형선박(해상택시)	고성군 하일면 임포항 ~ 자란도	

■ 고성군 해양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1] <개정 0000. 00. 00.>

해양관광시설 명칭 및 위치 (제3조 관련)

시설명	위 치	비고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고성군 하일면 송천리 108번지 일원	
와도 야영장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 1582번지 일원	*방문자센터 포함
선박(도선)	고성군 하일면 임포항 ~ 자란도	

해양관광시설 이용시간 및 휴무일 (제5조 관련)

시설명	이용시간		휴무일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프로그램	10:00 ~ 18:00	- 매년 1월 1일 - 설, 추석 당일
	숙박	14:00 ~ 익일 11:00	
	대관	10:00 ~ 19:00	
와도 야영장	14:00 ~ 익일 11:00		
소형선박(해상택시)	09:00 ~ 19:00		- 연중무휴

※ 단체(20인 이상)의 경우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이용시간 협의 가능

※ 이용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해양관광시설 이용시간 및 휴무일 (제5조 관련)

시설명	이용시간		휴무일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프로그램	10:00 ~ 18:00	- 매년 1월 1일 - 설, 추석 당일
	숙박	14:00 ~ 익일 11:00	
	대관	09:00 ~ 18:00	
와도 야영장	14:00 ~ 익일 11:00		
선박(도선)	09:00 ~ 19:00		- 연중무휴

- ※ 단체(20인 이상)의 경우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이용시간 협의 가능
- ※ 이용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해양관광시설 이용료 및 환급(제6조 관련)

1.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가. 이용료

(단위: 원)

구 분	이 용 료	비 고	
프로그램	자유의 바다	30,000	13종 시설 자유이용
	고성의 바다	60,000	자유의 바다 + 단체프로그램 1종 + 중식
	치유의 바다	1대1 90,000 2대1 70,000 3대1 50,000	자유의 바다 + 개별프로그램 1종 (+프로그램 추가 20,000) *1인 기준
숙박 (머무는 바다)	2인실	비수기 320,000 성수기 350,000	1박 기준 (고성의 바다, 2식 포함) *1인 제외 시 50,000원 공제 예) 4인실을 3인이 이용 시 비수기 590,000 성수기 650,000
	4인실	비수기 640,000 성수기 700,000	
대관 (빛나는 바다)	공유 오피스	1일 16,000 1개월 220,000	공용 와이파이, 팩스, 복사기 포함 *강의실 및 다목적홀 대관 기준시간 초과 시 1시간당 40,000원 추가
	스튜디오	1시간 20,000	
	강의실(회의실)	4시간 170,000	
	다목적홀	4시간 300,000	

나. 대여료

(단위 : 원)

구 분	대 여 료	비 고
프로그램	수영복, 래쉬가드	1인/1일
	수영모	

다. 환급

(단위: 원)

구 분		환 급	비고
관리·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또는 이용중단	-	이용료 전액	
이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또는 이용중단	①이용예정일 5일전	이용료 전액	
	②이용예정일 1~4일전	이용료의 90%	
	③이용일 당일 취소	이용료의 70%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 사유	-	이용료 전액	

2. 와도 야영장

가. 이용료

(단위: 원)

구 분	사용기준	요금		비고
		비수기	성수기	
신축동(2동)	1동/1박	100,000	120,000	
리모델링동(2동)	(4인 기준)	80,000	100,000	

나. 환급

(단위: 원)

구 분		환 급	비고
관리·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또는 이용중단	-	이용료 전액	
이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또는 이용중단	①이용예정일 5일전	이용료 전액	
	②이용예정일 1~4일전	이용료의 90%	
	③이용일 당일 취소	이용료의 70%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 사유	-	이용료 전액	

3. 소형선박(해상택시)

가. 이용료

(단위: 원)

구 분	이 용 료	비 고
1인	10,000	왕복요금

나. 환급

(단위: 원)

구 분	환 급	비고
관리·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또는 이용중단	-	이용료 전액
이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또는 이용중단	①이용예정일 1일전	이용료 전액
	②이용일 당일 취소	이용료의 70%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 사유	-	이용료 전액

※ 성수기: 매년 7. 20.부터 8. 31.까지와 금·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의 앞날

※ 비수기: 성수기 이외의 기간

해양관광시설 이용료 및 환급(제6조 관련)

1.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가. 이용료

(단위: 원)

구	분	이	용 료	비 고
프로그램 (1인 기준)	자유의 바다	30,000		11종 시설 자유이용
	고성의 바다	60,000		자유의 바다 + 단체프로그램 2종 (프로그램 추가당 15,000)
	치유의 바다	개별 테라피 80,000		자유의 바다 + 개별프로그램 1종 (프로그램 추가당 40,000)
숙박 (머무는 바다)	2인실	비수기 320,000 성수기 350,000		*(공통) - 당일: 고성의 바다 + 석식 - 익일: 자유의 바다 + 조식 *치유의 바다 이용 시 1종당 40,000
	4인실	비수기 640,000 성수기 700,000		
대관 (빛나는 바다)	공유 오피스	개인	1일 16,000 7일 70,000 1개월 220,000	*(통합이용) - 공유오피스 및 스튜디오
		단체	1일 120,000 7일 600,000 1개월 1,650,000	
	강의실(회의실)	2시간 50,000 (추가 1시간당 20,000)		

1) 숙박(머무는 바다) 이용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부과

가) 시간당 20,000원 추가사용료 부과(14:00 이후 퇴실 시 1박 요금 부과)

나) 퇴실 연장 시 사전문의 필수(상황에 따라 연장 불가)

2) 객실정원 초과 등에 따른 추가 이용 시 1인 경비 110천원 공제(숙박인원 3인 이상)

가) 사례 1) 4인 객실을 3인이 이용할 경우 비수기 530천원, 성수기 590천원

나) 사례 2) 2인 객실 2개를 3인이 이용할 경우 비수기 530천원, 성수기 590천원

나. 대여료

(단위 : 원)

구 분		대 여 료	비 고
프로그램	수영복, 래쉬가드	4,000	1인/1일
	수영모	1,000	

다. 환급

(단위: 원)

구 분		환 급	비고
관리·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또는 이용중단	-	이용료 전액	
이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또는 이용중단	①이용예정일 5일전	이용료 전액	
	②이용예정일 1~4일전	이용료의 90%	
	③이용일 당일 취소	이용료의 70%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 사유	-	이용료 전액	

2. 와도 야영장

가. 이용료

(단위: 원)

구 분	사용기준	요금		비고
		비수기	성수기	
신축동(2동)	1동/1박	100,000	120,000	
리모델링동(2동)	(4인 기준)	80,000	100,000	

나. 환급

(단위: 원)

구 분		환 급	비고
관리·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또는 이용중단	-	이용료 전액	
이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또는 이용중단	①이용예정일 5일전	이용료 전액	
	②이용예정일 1~4일전	이용료의 90%	
	③이용일 당일 취소	이용료의 70%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 사유	-	이용료 전액	

3. 선박(도선)

가. 이용료

(단위: 원)

구 분	이 용 료	비 고
1인	10,000	왕복요금

나. 환급

(단위: 원)

구 분	환 급	비고
관리·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또는 이용중단	-	이용료 전액
이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또는 이용중단	①이용예정일 1일전	이용료 전액
	②이용일 당일 취소	이용료의 70%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 사유	-	이용료 전액

※ 성수기: 매년 7. 20.부터 8. 31.까지와 금·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의 앞날

※ 비수기: 성수기 이외의 기간

해양관광시설 감면기준(제7조 관련)

감면범위	감 면 대 상	비 고
1. 전액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경상남도, 고성군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등을 위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교육, 연구 등 공무 수행을 위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영유아: 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 100분의 5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소인: 36개월 이상 12세 이하(초등학생) 	
3. 100분의 2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명예 군민 포함) ○ 고성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단체 및 기업 	

비고)

- ① 이용료를 전액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해양관광시설 관련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단, 영유아의 경우 ②참고)
- ②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을 이용할 때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적용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해양관광시설 감면기준(제7조 관련)

감면 범위	감 면 대 상	비 고
1. 전액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경상남도, 고성군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등을 위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교육, 연구 등 공무 수행을 위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영유아: 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 100분의 5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중 65세 이상 (명예 군민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프로그램 중 자유의 바다 평일 이용에 한함(공휴일 제외) ○ 소인: 36개월 이상 12세 이하(초등학생) 	
3. 100분의 2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명예 군민 포함) ○ 고성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단체 및 기업 	

비고)

- ① 이용료를 전액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해양관광시설 관련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단, 영유아의 경우 ② 참고).
- ②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을 이용할 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대상이 둘 이상 해당될 경우 감면 범위가 높은 것을 적용한다(중복감면 불가).
- ③ 별표 3 제1호 나목 대여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고성군 해양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를 미첨부함.

작성자: 관광진흥과장 노 석 철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6. 2. 3., 2023. 6. 20., 2025. 4. 8.>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 4의2.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에 관한 사업
5. 유희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6.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레저관광”이란 해양 또는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국민의 건강·휴양의 증진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한 활동 또는 해양레저장비를 활용한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 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낚시
 - 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 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 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 마. 「어촌·어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촌에서 이루어지는 관광을 위한 활동

- 바.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크루즈선을 이용한 활동
- 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 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해양생태관광 활동
- 자. 「해양수산물발전 기본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해양레저스포츠 활동
- 차.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치유 활동
- 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레저관광을 활성화하고, 국민이 해양레저관광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해양레저관광산업)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낚시산업: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낚시터업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낚시어선업
2. 마리나산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마리나업
3. 수상레저산업: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4. 수중레저산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수중레저사업
5. 어촌관광산업: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어항편익시설 중 문화시설, 레저용 기반시설, 관광객 이용시설 및 휴게시설을 활용한 관광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6. 크루즈산업: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다른 크루즈산업

7. 해수욕장 관련 산업: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에서 이루어지는 레저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8. 해양생태관광산업: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해양생태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9. 해양레저스포츠산업: 「해양수산물발전 기본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해양레저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10. 해양치유산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11. 그 밖에 해양레저관광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치유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해양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치유”란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하여 체질 개선, 면역력 향상, 항노화 등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2. “해양치유자원”이란 갯벌, 소금, 해양심층수, 해조류, 해양경관, 해양기후 등 해양치유에 활용될 수 있는 해양자원을 말한다
3. “해양치유시설”이란 해양과 연안 등에서 해양치유에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4. “해양치유지구”란 해양치유자원을 갖추고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5. “해양치유서비스”란 해양치유자원과 해양치유시설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치유서비스 진흥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해양치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해양치유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